

평가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4. 12. 1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평가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에서 심의·결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
2.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
3. 사장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조건 결정
4.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
5.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경영계약서상의 경영평가지표 및 가중치의 변경에 대한 결의
6.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의
7. 사장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실적의 점검 및 조정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 업 비 밀 |
| 사 외 비 CONFIDENTIAL |

제5조(위원회 운영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규정 제16조에 의한다.

부 칙 (2024.12.12.)

이 규정은 2024. 12. 12.부터 시행한다.